

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1. 16

(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김 종 철

나. 개정사유

- 화순군물품관리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은 당해물품의 취득단가를 기준 하한선으로 정하여 중앙및 타 도·군등에 소요조회를 하거나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,
- 그 금액이 너무 낮아 불용결정 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단위당 가격 기준 완화
 - 중앙 각 부처 : 취득단가 10백만원이상 → 취득단가 20백만원이상
 - 타 시 도 : 취득단가 10백만원이상 → 취득단가 20백만원이상
 - 도내(시,군포함) : 취득단가 5백만원이상 → 취득단가 20백만원이상
- 불용 물품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 물품당 가격 단가 기준 완화
 - 장부상 취득 가격 10백만원이상 → 장부상 취득가격 20백만원 이상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2000년도 정기 재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,
-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을 현실화 하기위해 불용품의 소요 조회 단위 당 가격 기준을 2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 2천만원이상으로 완화 조치 하였음.
- 이는 재무조사결과 문제점으로 대두된 장부 미등재 불품의 파다와 불용대상 물품의 장기보유등 물품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.
- 아울러,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 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.

제17조제4항중 “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” 을 “20백만원이상인 물품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) ①~② 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도내(시·군포함)와 정부 각 부처, 타시·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불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</p> <p>2. 도내(시·군포함)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불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미만인 불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</p>	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불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.</p>
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~③ (생략)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기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"감정기관"이라 한다)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- - - - - - - - - - 단가 20 백만원이상인 물품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
<p>⑤~⑧ (생략)</p>	<p>⑤~⑧ (현행과 같음)</p>